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철도유희부지 활용 촉진 방안 등 〉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43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관 현 준

목 차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2204343)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참고사항	2
4. 검토의견	3
가. 철도유흡부지 활용 사업 개요	3
나. 철도유흡부지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5
다. 철도유흡부지 활용사업 절차(안 제35조의2 신설)	9
라. 철도유흡부지 대부 등에 관한 특례(안 제35조의3 신설)	12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2204343)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9. 26.

다. 회 부 일 : 2024. 9.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철도유흡부지 및 이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으며, 「철도 유흡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서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으로 분포한 철도 유흡부지 2,566만㎡ 중 64.1%에 해당하는 1,646만㎡만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활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 유흡부지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법·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 유흡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철도유흡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흡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철도유희부지 및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12호 및 제13호 신설).
- 나.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 등은 활용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 다. 국가는 철도유희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철도유희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철도유희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안 제35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위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검토의견

가. 철도유희부지 활용 사업 개요

철도 유희부지 활용 사업은 공공 자원인 철도 유희부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활용계획을 제안받아 주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적 근거로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이 2015년 7월 제정되어 시행 중임.

대상부지는 철도운영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철도 유희부지·폐선부지로써, 철도교량 등 철도 선로의 하부 부지, 지하에 조성된 철도시설의 상부 부지, 철도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잔여지 등이며, 사업방식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됨.

【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 사업 방식 】

① **사용허가**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사용료 : 재산가액×사용면적×사용요율*)

* 지자체가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은 1%, 관광·상업목적은 5% 이상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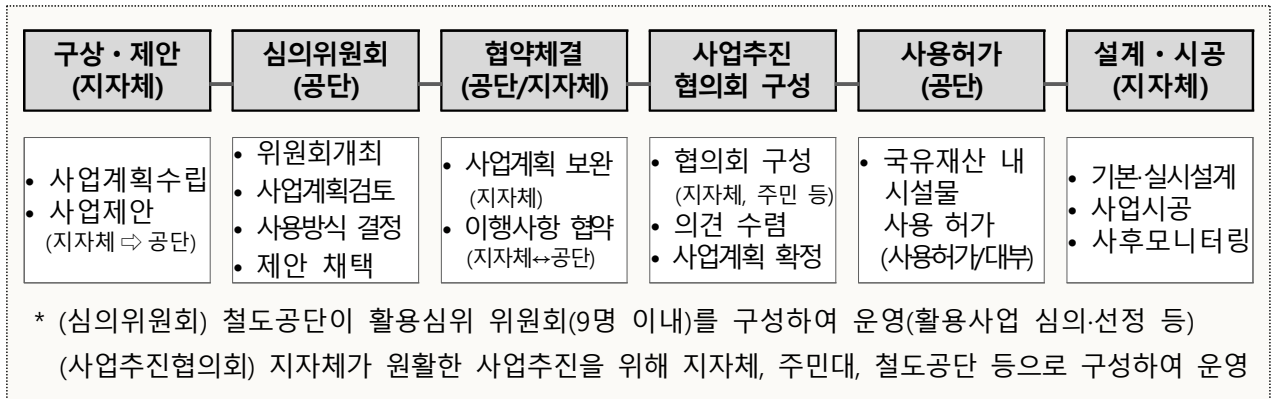
② **기부채납** : 사용료 총액이 기부가액(감정평가액)에 도달시점*까지 사용료 면제 (무상기간: 시설물 기부가액÷연사용료, 최장 20년) 후 유상 사용허가

※ 자료 : 국토교통부

사업절차를 살펴보면, 국가철도공단에서 매년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선정 후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거침.¹⁾

1) 철도 유희부지 현황 및 철도 유희부지 활용사업 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 세부 절차도 】



※ 자료 : 국토교통부

나. 철도유희부지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1) 개정안의 내용

안 제3조제12호 및 제13호는 각각 “철도유희부지”와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11.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철도유희부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건설로 이전된 기존의 철도시설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철도시설의 부지로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않는 부지(「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이용되는 부지는 제외한다) 나.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13.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이하 “활용사업”이라 한다)이란 철도유희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철도유희부지의 소재지를 관할하
<u><신설></u>	

현행	개정안
	<u>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제35조의2에 따라 활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u>

2) 검토의견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유희부지 활용 방향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을 제정(2015.7.17.) 및 시행하고 있음. 안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는 동 지침에 규정된 철도 유희부지와 철도 유희부지 활용사업의 개념을 법률에 직접 정의하려는 것임.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은 그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유희부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목적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국유재산인 철도유희부지에 관한 사용·수익행위이므로 행정규칙인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이 아니라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임²⁾.

현행 지침상의 정의와 개정안의 정의가 표현상에 일부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철도유희부지와 관련하여 개정안이 「철도지하화 및 철도

2) 배건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제12호, 2017. 10., p.48 참고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이용되는 부지는 제외되도록 하여 최근 입법사항을 반영하고 있고, 대통령령을 통해 지침에 열거된 철도 선로의 하부 부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의 경우에도 일부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활용사업을 현행 지침과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임.

【 지침과 개정안의 정의 비교 】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	개 정 안
1. "철도 유희부지"란 철도 폐선부지와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다음의 각목의 부지를 말한다. 가. 철도교량 등 철도 선로의 하부 부지 나. 지하에 조성된 철도시설의 상부 부지 다. 철도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잔여지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부지 2. "철도 폐선부지"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철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철도부지를 말한다.	12. "철도유희부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건설로 이전된 기존의 철도시설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철도시설의 부지로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않는 부지(「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이용되는 부지는 제외한다) 나.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	개 정 안
3. "철도 유희부지 활용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 유희부지를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 지침에 따라 활용계획의 수립, 제안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이하 “활용사업”이라 한다)이란 철도유희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철도유희부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제35조의2에 따라 활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토교통부 의견

철도 유희부지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법률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점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 절차(안 제35조의2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안 제35조의2는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등은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신설>	제35조의2(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관할구역에서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계획(이하 “활용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활용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활용사업의 명칭,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활용사업의 대상지역·위치 및 그 면적 3. 활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철도 유희부지의 이용방법 4. 활용사업의 추진계획, 자원조달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5. 그 밖에 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용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이를 변경승인하려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용사업계획의 작성, 승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현재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의 절차는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정의규정에서 검토한 바와 동일하게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이 국유재산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그 절차를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 지침³⁾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철도공단에 제안하면, 국가철도공단이 이를 검토한 후 국가철도공단이 구성된 철도 유희부지 활용심의위원회에서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개정안에 따를 때에도 국가철도공단이 실무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지침의 실질적인 차이는 심의기구가 현행법 제6조⁴⁾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로 변경된 점임.

3)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 절차 관련 지침의 내용을 참고자료 참조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철도산업위원회) ①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철도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2.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3.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4.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5.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산업위원회는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철도시설 부지 관리의 일환인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의 심의 기구로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 관련 정의,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철도공단 내부 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부 소속의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국토교통부 의견

철도 유희부지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 관련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임.

라. 철도유희부지 대부 등에 관한 특례(안 제35조의3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안 제35조의3은 국가가 철도유희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철도유희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유희부지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유희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5조의3(철도유희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철도유희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철도유희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유희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및 대부기간 등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철도유희부지가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유희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유희부지 활용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철도유희부지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이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이면 대부계약 또는 매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개정안에서 규율하고 있는 대부 등에 관한 특례는 철도유희부지가 일반재산일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임.

국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현행 법령을 살펴보면, 먼저 대부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관련 조문이 다수 준용됨. 동법 제31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2조, 제51조5)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5)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5.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32조(사용료의 감면)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제2항·제3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의 방법을 통한 대부계약 및 대부료 면제가 가능함. 다만, 대부료 면제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음으로, 매각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⁷⁾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처분가격은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함.

개정안은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부 시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대부료 면제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철도유희부지는 대부분 행정재산으로 규율되고 있어 일반재산의 규율사항인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특례를 규율하는 것이 철도유희부지

6) 「국유재산법」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7)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2조제4호)

활용사업의 촉진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현행 지침상 개념에 부합하는 철도유희부지는 중 96.4% 행정재산이며, 3.6%가 일반재산임.

【 철도유희부지 중 행정재산, 일반재산 비중 】

(단위 : m²)

구분(2024.1월 기준)	합계	행정재산(비율)	일반재산(비율)
철도 유희부지	32,472,304	31,317,842(96.4%)	1,154,462(3.6%)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부지는 장래 활용계획 등에 따른 변동성이 높은 재산으로, 국유재산 처분 등 사유 발생 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함.
 ※ 자료: 국토교통부

둘째, 현행 국유재산 법령에 따를 때 철도유희부지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한 대부·매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개정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셋째, 「국유재산법」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는데⁸⁾, 이처럼 국유재산 관리의 일반법인 「국유재산법」의 원칙과 달리 개별 법률에서 무상대부의 특례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또한, 개정안 제35조의3

8)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하여 제31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제31조제1항은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되 사안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임.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우 철도유희부지가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지자체가 사용하려는 경우 철도유희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문구조상 무상대부의 사유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유희부지 활용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아 무상대부가 남용될 여지가 있음.

참고로, 안 제35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료 감면 요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제1호9)에 따른 특례로서 동법 제4조10)에 따르면 개정안에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344호)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임.

3) 관계기관 의견

(국토교통부)

현행 국유재산법령에서도 지자체 직접 공용·공공용 목적 사용 시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이 가능하므로 개정 실익이 없으며, 철도 유희부지

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3. (생략)

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무상대부는 국유재산 유상대부 원칙에 위배되고, 철도 유휴부지를 다른 국유재산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경쟁입찰이 기본원칙이며, 특정 지자체 수의 계약 허용 시 특혜 및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5

참고1

철도 유휴부지 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구분	노선명	면적(m ²)		증감(m ²)	
		2023년도	2024년도		
폐선부지	합계	32,084,961	30,221,864	△ 1,863,097	
	폐선부지	경부선(서울~부산)	2,092,813	1,855,917	△236,896
		경전선(광주송정~삼랑진)	3,985,366	3,782,583	△202,783
		경춘선(서울~춘천)	1,544,231	1,467,831	△76,400
		군산선(舊군산~익산)	543,803	477,971	△65,832
		대전남연결선(대전~옥천)	129,569	129,353	△216
		수여선(수원~여주)	91,494	83,521	△7,973
		장항선(천안~익산)	1,511,477	1,401,209	△110,268
		전라선(익산~여수)	1,127,651	1,091,126	△36,525
		중앙선(청량리~경주)	8,518,728	8,225,087	△293,641
		영동선(영주~강릉)	956,976	715,161	△241,815
		수인선(수원~인천)	69,744	57,578	△12,166
		임항선(마산~마산항)	71,921	71,099	△822
		호남선(대전~목포)	763,718	766,043	2,325
		동해남부선(포항~부산진)	2,749,727	2,710,765	△38,962
		태백선(제천~백산)	577,482	526,501	△50,981
		경원선(동두천~연천)	-	291,525	291,525
		소계	56,242,179	53,583,609	△1,081,430
	미건설선	동해중부선(포항~삼척)	2,363,223	2,035,127	△328,096
		동해북부선(재진~감호)	2,655,036	2,326,159	△328,877
		소계	5,018,259	4,361,286	△656,973
	산재부지		2,332,002	2,207,308	△124,694
교량하부		2,067,960	2,023,452	△44,508	
선로상부		237,147	226,988	△ 10,159	
전체 합계		34,390,068	32,472,304	△ 1,917,764	

참고2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 2015년부터 총 69개 공모사업 선정, 2024년 상반기에는 6개 사업 선정

연번	연도	노선	위치 및 규모	사업비 (억원)	주요내용
1	2015	동해 중부선	강원 삼척시 17,383m ² , 1.0km	30	- 장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 (소재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308번지 일원 · (사업내용) 캠핑장(카라반, 주차장) 조성
2	2015	동해 남부선	경북 포항시 57,226m ² , 4.3km	147	- 포항역~효자역간 포항 철길숲 조성사업 · (소재지)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73-4 일원 · (사업내용) 산책로, 자전거도로, 7개의 테마 숲 등
3	2015	경전선	전남 광양시 52,227m ² 2.5km	23	- 광양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 (소재지) 광양읍 세풍리 838-2일대(60필지)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와 테마 꽃길
4	2015	경전선	경남 함안군 27,863m ² , 2.1km	52	- 도심재생 창조경제권역 구축사업 · (소재지)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말산리, 검암리 일원 · (사업내용) 공원조성, 역사 리모델링, 산책로, 광장
5	2015	경전선	전남 순천시 42,447m ² , 2km	19	- 순천 에코 누비길 조성사업 · (소재지) 순천시 신대리 1237-2, 복성리 26-3번지 일원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산책로, 공원 조성 등
6	2015	수인선	경기 수원시 27,967m ² , 1.6km	14	- 수인선(세류삼각선)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66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 산책로 조성
7	2016	영동선	강원 태백시 55,521m ² , 0.5km	125	- 태백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 (소재지) 강원 태백시 통동 73-78 일원 · (사업내용) 고원역사캐릭터파크, 통리역사관 조성 등
8	2016	임항선	경남 창원시 38,342m ² , 5.5km	98	-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공사 · (소재지) 마산세관~마산회원구 석전동 개나리맨션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산책로, 공원 조성 등
9	2016	경부 고속선	안산 상록구 14,108m ² , 0.4km	15	- 수암 꿈나무 체육공원 조성사업 · (소재지)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408-3번지 일원 · (사업내용) 체육시설(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등)
10	2016	경전선	경남 함안군 8,561m ² , 2km	15	- 농촌커뮤니티 재생루트 구축사업 · (소재지) 함안군 검암리, 송정리, 산인면 신산리 일원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산책로 및 쉼터 조성
11	2016	경전선	경남 진주시 185,164m ² , 28km	100	- 참 이야기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 (소재지) 진주시 舊)유수역~舊)내동역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12	2016	경전선	경남 하동군 27,640m ² , 2.2km	54	- 그린레일로드 조성사업 · (소재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및 광평리 일원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연번	연도	노선	위치 및 규모	사업비 (억원)	주요내용
13	2016	경전선	전남 광양시 499,331m² 24.8km	358	- 광양 폐철도 문화재생사업 • (소재지) 광양읍 인동리 227-5번지 일대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터널특화사업
14	2017	경전선	경남 함안군 32,809m², 1.2km	26	- 경전선 폐선부지 주민상생공간 조성사업 • (소재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산인면 신산리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쉼터 조성 등
15	2017	경전선	경남 김해시 44,350m² 1.8km	78	- 진영 폐선부지 도시숲 조성사업 • (소재지)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본산리 일원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쉼터 조성 등
16	2017	경원선	경기 동두천 5,224m² 0.5km	5	- 경원선 전철 고가하부 공원조성사업 • (소재지)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541-3번지 일대 • (사업내용) 수목식재, 블록 포장, 시설물설치
17	2018	안산선	경기도 1,545m², 0.1km	24	- 고잔역 청년창업공간 Station-G 조성사업 • (소재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85-8번지 • (사업내용) 청년창업공간, 지역주민 활용공간 조성
18	2018	수인선	인천 미추홀구 16,271m², 1.5km	39	- 수인선 유희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 • (소재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536번지 • (사업내용) 산책로, 숲길 조성(LED 장미정원, 분수)
19	2018	경전선	경남 김해시 16,171m², 0.5km	18	- 김해시 진영읍 폐선로 숲길 조성사업 • (소재지) 김해시 진영리 701-1번지 일원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산책로, 주민체육시설 조성
20	2018	경부선	대구시 5,269m², 0.2km	7	- 경부고속철도 복개구간 환경개선사업 • (소재지) 대구 동구 신천동 545-2번지 • (사업내용) 수목식재, 벽면녹화, 산책로 조성
21	2018	경춘선	강원 춘천시 3,831m², 0.4km	14	- 컨테이너형 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 • (소재지) 강원 춘천시 근화동 391-1번지 • (사업내용) 청년창업공방, 창작공간, 소공연장 조성
22	2018	경부선	경북 경산시 6,777m², 0.3km	9	- 경산역 역전마을 주민쉼터 및 주차장 조성사업 • (소재지) 경북 경산시 옥산동 123-1번지 일원 • (사업내용) 공영주차장, 소공원 조성
23	2018	호남 고속선	충남 공주시 3,250m², 0.3km	7	- 공주역 문화관광 플랫폼 조성사업 • (소재지)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168-1 등 6필지 • (사업내용) 이용객 쉼터, 다용도 데크, 파고라 조성
24	2018	안산선	경기 안산시 2,290m², 0.2km	2	- 문화예술 플랫폼 "Station-A" 조성사업 • (소재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89-2번지 • (사업내용) 청년창업공방, 커피공방, 야외 소공연장
25	2019	경전선	경남 창원시 8,117m², 1.3km	21	- 행복 의창 폐철도부지 활용사업 • (소재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담동 427-1 일원 • (사업내용) 공원, 산책로, 주민휴식공간 조성
26	2019	경전선	경남 함안군 66,607m², 6.1km	95	- 아라캐비 테마로드 조성사업 • (소재지)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981-1 일원 • (사업내용) 도깨비 테마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

연번	연도	노선	위치 및 규모	사업비 (억원)	주요내용
27	2020	경인선	인천 동구 811m², 0.5km	2	- 만석동 철도 유휴부지 마을환경 개선사업 • (소재지) 인천시 동구 만석동 62-2 일원 • (사업내용) 산책로 및 휴게쉼터 등 조성
28	2021	중앙선	강원 원주시 256,300m², 10.3km	228	-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사업 •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역~반곡역 일원 • (사업내용) 산책로, 자전거도로, 바람길숲 조성
29	2021	경부선	경북 경산시 7,778m², 0.3km	32	- 경산시 옥산동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 (소재지) 경북 경산시 옥산동, 사정동, 옥곡동 일원 • (사업내용) 생활체육공간, 주차장, 소공연장 등 조성
30	2021	경의선	서울 마포구 24,213m², 0.5km	86	- 경의선 선형의 숲 조성 사업 •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중동 27-51 일원 • (사업내용) 경의선 숲길과 연계한 선형 공원 조성
31	2021	경의선	경기 고양시 5,319m², 0.5km	7	- 경의선 유휴부지 녹지조성사업 • (소재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19-3번지 일원 • (사업내용) 순환산책로, 주민쉼터, 녹지 조성
32	2021	경원선	서울 노원구 428m², 0.2km	2	- 월계역3번출구 인근 보행환경개선사업 •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259-1 일원 • (사업내용) 보행로, 주민쉼터 조성
33	2021	경전선	경남 창원시 3,876m², 0.3km	6	- 내서읍 중리 산책로 조성사업 • (소재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677-2 일원 • (사업내용) 공원, 산책로, 휴게공간 조성
34	2022	중앙선	경기 양평군 29,037m², 1.3km	17	- 폐철도를 활용한 선형공원 조성사업 •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695-5 • (사업내용) 빗터널, 산책로 조성
35	2022	삼척선	강원 동해시 1,325m², 0.25km	11	- 전천 스카이가든 조성사업 • (소재지) 강원도 동해시 나안동 폐철교 • (사업내용) 산책로, 쉼터, 휴게시설 조성
36	2022	중앙선	경북 영주시 9,217m², 0.5km	15	- 영주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 (소재지) 영주시 휴천동 38-5번지 일원 • (사업내용) 산책로, 휴게쉼터, 공공시설 조성
37	2022	중앙선	경북 안동시 81,900m², 2.2km	157	- 원도심~월영교 테마화거리 조성사업 • (소재지) 안동시 법흥동, 상아동 일원 • (사업내용) 테마화거리, 휴게시설 조성
38	2022	동해 남부선	울산시 198,738m², 9.5km	280	- 울산시 북구 하나로 어울길 조성사업 • (소재지) 울산시 북구 농소1·2동, 송정동 일원 • (사업내용) 선형거리, 테마광장 조성
39	2022	동해 남부선	부산 기장군 252,600m², 8.18km	382	- 빛·물·꿈 에코 스티치 Rail road • (소재지)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일광면, 장안읍 일원 • (사업내용) 광장, 쉼터, 터널, 조각공원 조성
40	2022	군산선	전북 군산시 51,582m², 2.5km	200	- 군산 철길숲(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 (소재지) 사정삼거리 및 조촌동 일원 • (사업내용) 바람길숲, 산책로, 공원 조성

연번	연도	노선	위치 및 규모	사업비 (억원)	주요내용
41	2022	장항선	전북 익산시 30,000m ² , 1.5km	30	- 미세먼지 차단숲 및 오산 도시숲 조성 • (소재지) 익산시 송학동 880-4번지 일원 • (사업내용) 산책로, 쉼터 조성
42	2022	군산선	전북 군산시 10,068m ² , 1km,	15	- 군산시 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 (소재지) 군산시 금암동 139-48 일원 • (사업내용) 광장, 놀터 조성
43	2022	경전선	전남 광양시 16,613m ² 0.4km	9	- 섬진강 매화공원 조성사업 • (소재지)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산8-3 등 20필지 • (사업내용) 매실재배단지, 산책로,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
44	2022	경의 중앙선	서대문구 237m ² 0.02km	3	- 아웃도어 다이닝 플레이스 이화쉼터 조성 •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6-7 • (사업내용) 주민쉼터, 소공원 조성
45	2022	경원선	경기 연천군 146,729m ² 2.4km	26	- 경원선 폐선철도 활용사업 : 다시 그대로(路) 경원선 • (소재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55-1 등 50필지 • (사업내용) 철교공원, 리버마켓, 꽃길명소화 사업 등 조성
46	2022	대구선	영천시 1,144m ² 0.2km	10	- 폐철도부지 도시숲(치유경관숲) 조성사업 • (소재지) 경북 영천시 성내동 224-2 등 5필지 • (사업내용) 휴게시설, 향기원, 계절숲, 포토존 등 조성
47	2022	전라선	익산시 47,000m ² 2km	40	- 오산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 (소재지) 전북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1071 등 6필지 • (사업내용) 미세먼지 저감수종 식재, 쉼터, 산책로 등 조성
48	2023	경의선	서대문구 841m ² 0.03km	4	- 북아현 연결녹지(공원) 조성 • (소재지) 서대문구 북아현동 1011-9 • (사업내용) 공원, 주민쉼터(정자, 의자 등)
49	2023	경춘선	남양주시 23,042m ² 0.57km	52	- 금곡동 Slow & Smart Ctiy 도시재생 • (소재지) 남양주시 금곡동 682-1 등 15필지 • (사업내용) 스마트 어울림 마당, 스마트팜, 자전거길 조경 식재
50	2023	경원선	양주시 2,304m ² 0.28km	2.5	- 경원선 유휴부지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설사업 • (소재지) 양주시 덕계동 267-1 등 11필지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휴게공간
51	2023	분당선	용인시 4,700m ² 0.08km	2	- 유휴지 공간 활용을 통한 모두의 정원 조성 • (소재지) 용인시 상갈동 465-5 등 6필지 • (사업내용)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52	2023	중앙선	영주시 2,800m ² 0.08km	5	- 영주시 실외정원 조성사업 • (소재지) 영주시 영주동 470-43 등 5필지 • (사업내용) 산책로, 휴게쉼터 등
53	2023	중앙선	안동시 1,253,328 m ² 35km	1,148	- 도심 속 복합 Railway, 안동 이음길 조성사업 • (소재지) 안동시 북후면 웅천리 329-2 등 944필지 • (사업내용) 자전거/보행자 도로, 안동철교 특성화, 루미 너스 터널, 쉼터 등
54	2023	동해선 괴동선	포항시 20,490m ² 1km	3.6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유강 완충녹지) • (소재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26-3 등 122필지 • (사업내용) 산책로, 자전거도로, 휴게·편의시설, 수목식재 등

연번	연도	노선	위치 및 규모	사업비 (억원)	주요내용
55	2023	경전선	사천시 44,654m² 1.14km	60	- 가칭) “곤명웰니스파크” 조성계획 •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524-1 등 5필지 • (사업내용) 산책로, 꽃터널, 클럽하우스 및 파크골프장 등
56	2023	경전선	함안군 70,363m² 6.7km	40	- 철도유휴부지 활용 자전거도로 연결사업(군북~진주간) • (소재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48-1 등 11필지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57	2023	경전선	창원시 20,802m² 3.04km	19	- 내서 용담(신당터널)~광려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 (소재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 161-3 등 59필지 •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휴게시설, 데크로드 등
58	2023	경전선	김해시 50,400m² 2km	70	- 진영 폐선부지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 (소재지) 김해시 진영읍 좌곡리 636-1 등 84필지 • (사업내용) 자연쉼터, 회복숲, 숲속쉼터,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59	2023	동해 남부선	울주군 46,385m² 0.75km	22	- 울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소재지)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502-3 등 124필지 • (사업내용) 파크골프장, 관리장, 주차장 등 조성
60	2023	전라선	익산시 48,186m² 1km	40	- 인화동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 (소재지) 익산시 인화동1가 218 등 8필지 • (사업내용) 철길 광장, 산책로 및 쉼터 등 주민친화공간 조성
61	2023	경부선	부산진구 2,600m² 0.1km	240	-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 (소재지)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129-1 등 1필지 • (사업내용) 문화 체육복합센터(체육센터, 풋살장 등) 조성
62	2023	경춘선	노원구 5,610.9m² 0.87km	83	- 경춘선숲길 연장 및 특화공간 조성사업 •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85 등 5필지 • (사업내용) 산책로,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친화공간 조성
63	2023	경원선	동두천시 3,350m² 0.17km	9	- 소요산역 하부 공간 주민친화시설 조성사업 • (소재지) 동두천시 상봉암동 70-1 등 1필지 • (사업내용) 커뮤니티 및 쉼터 공간, 체육시설 조성
64	2024	동해 남부선	경주시 4,040m² 0.1km	10	- 북경주 주민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 (소재지)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431-2 등 23필지 • (사업내용) 경주시 공공체육6시설 확충을 위한 테니스장 및 족구장 조성
65	2024	경춘선	가평군 2,803m² 0.83km	5	- 청평 폐철길 유휴부지를 활용한 둘레길 조성 •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산13-2 일원 • (사업내용) 폐터널을 활용한 조명 및 벽화, 포토존 조형물, 데크쉼터 등
66	2024	동해 남부선	울산시 울주군 16,806m² 2.6km	97	- 옹기마을 O! 힐링산책로 조성사업 • (소재지) 울산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옹기마을) • (사업내용) 맨발걷기길(황토길), 터널 내 불가마 콘텐츠, 노천족욕탕, 데크쉼터 등 조성
67	2024	서해선	화성시 23,989m² 12개소	35	- 서해선 교각 사이음공원 조성사업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남양읍 일원 • (사업내용) 체육시설, 공원시설 등 주민친화공간

연번	연도	노선	위치 및 규모	사업비 (억원)	주요내용
68	2024	중앙선	영천시 3,637m ² 0.26km	5	- 북안면 임포마을 실외정원 조성 • (소재지)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142-3 일원 • (사업내용) 산책로, 맨발길, 휴게시설, 수목 식재 등 조성
69	2024	대구선	경산시 4,850m ² 0.5km	15	- 하양 금락리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 (소재지) 경북 경산시 금락리 일원 • (사업내용) 공원, 쉼터, 주차시설 등 조성

참고3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 중 절차 관련 사항

제8조(활용사업의 계획수립 및 제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유희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할 행정구역내에 위치한 철도 유희부지의 활용사업에 대한 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제안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활용계획의 제안 요청을 받아 관할 행정구역내 철도 유희부지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국가철도공단에 제안하거나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제안 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행정구역에 위치한 철도 유희부지에 대하여 공동 활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철도공단에 활용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활용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면적 및 길이, 특성 등 개요
2. 철도 유희부지의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개발계획 등 여건분석
3.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분석
4. 철도 유희부지의 활용용도의 수급분석, 사용방식, 인허가 사항
5. 토지이용구상(관련 도면 포함), 재원조달계획, 관리운영계획 등 사업추진계획, 사업의 성과 목표 및 기대효과 등
6. 국가철도공단이 제4조제6항에 따라 수립한 '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과의 조화 등

제11조(철도 유희부지 활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국가철도공단은 이 규정에 따른 철도 유희부지의 사용에 관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철도 유희부지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토교통부 3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
2.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본부장급부터 처장급까지의 임직원
3.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조경 등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변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12조(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용사업의 목적, 필요성, 위치 및 규모, 활용용도 등의 적합성
2. 활용사업 시행방식, 재원조달계획,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등의 실현 가능성
3. 철도 유희부지의 사용방식(「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철도건설법」이나 「철도사업법」에 의한 점용허가) 및 그 밖에 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한 인·허가 내용 등의 적정성
4. 철도 유희부지의 활용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활용계획을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의2(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희부지 활용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2조제3호에 따른 활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2. 제2조제3호에 따른 활용사업의 부대사업
3. 신규로 건설·개량하는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활용사업
4. 기타 소규모,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